

제주지방법원 2018. 3. 27 선고 2017가단5482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19. 6. 26 선고 2018나11282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8. 3. 27 선고 2017가단54823 판결

전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

피고1. B

2. 주식회사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

담당변호사 최호웅, 김성훈

변론 종결 2018. 2. 27.

판결 선고 2018. 3. 27.

주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. 6. 17. 접수 제687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

나.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25/2,776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

2017. 3. 14. 접수 제284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1/4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. 6. 17. 접수

제687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

75/69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. 3. 14. 접수 제284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하고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은 망 D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의 소유였다.

나. 망인은 슬하에 피고 B, 망 E, F, G의 자녀들을 두었고, 원고는 망 E의 배우자이며, H, I은 원고의 아들들이다.

다. F과 피고 B은 2015. 12. 24. 망인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10045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11. 30.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면서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J과 피고 B을 선임하였다.

라. 피고 B은 2016. 6. 17.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. 3. 14.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에게 이 사건 2부동산 중 75/69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망인은 2017. 5. 5.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데, 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.

또한,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2부동산 중 75/6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.

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,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부동산 중 75/694 지분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망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고,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.

따라서 피고들 명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

1)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10113

판결 등 참조).

2) 인정사실 갑 제3, 5, 6, 7, 8,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) 망인은 K생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 만 94세의 고령이었고, 2013. 5. 8. 의료법인 L(이하 'L'이라 한다)에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,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.

나) 망인에 대한 위 제주지방법원 2015누단10045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L은 2016. 1. 21. '망인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질환으로 2013. 5. 8.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,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, 그러한 상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. 또한, 망인은 K-MMSE 검사(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)에서 30점 만점에 17점(분명한 인지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수치), CDR 검사(치매등급검사)에서 1점(중증도의 기억장애에 해당하는 수치)을 기록하여 알츠하이머병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된다'는 회신을 하였다.

다) 위 제주지방법원 2015누단10045호 성년후견개시 사건과는 별도로 원고와 H은 망인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누단521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,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L은 2016. 8. 16. '망인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,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며 그러한 상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. 또한, 망인은 K-MMSE 검사에서 30점 중 15점, CDR 검사에서 2점을 기록하여 알츠하이머병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된다'라는 회신을 하였다.

라) 망인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6. 6. 27. '옷장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고, 딸을 부인으로 생각하고 딸과 아들이 서로 사귀다'는 등의 망상 증상을 보였다.

마)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6. 6. 17. F, 피고 B,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최호웅 변호사 및 M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등은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하여 위 변호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사를 확인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다는 말을 직접한 것은 아니고 위 변호사가 "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인 B씨에게 증여를 하시겠어요?"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고, 피고 B은 위 사무장에게 "아버지(망인)가 앞이 안 보이시니까 손을 잡아서

찍어 주세요."라고 말하였으며, 망인이 증여계약서 등의 서류 내용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사무장은 "찍겠습니다."라고 말함과 동시에 망인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증여계약서 등의 서류에 날인하였다.

3)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이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배제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독점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나. 원고가 망 E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
피고들은 이 법원에 2017. 9. 7.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망인의 장남인 망 E의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가 2018. 1. 16.자 준비서면에서 망 E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가 망 E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, 이에 따라 원고는 망 E의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, 피고들이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그러나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,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(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), 을 제3 내지 6호증,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 E의 대습상속인이라는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[망인에 대한 제적등본과(갑 제2호증의 2) 망 E의 병적증명서(을 제4호증)에는 망 E이 1975. 2. 16.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, 위 제적등본에 망 E과 원고의 혼인신고일이 1975. 2. 21.로 기재되어 있어 일응 위 혼인신고는 망 E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. 그러나 위 제적등본에 망 E과 원고의 자녀인 H에 대한 출생신고일은 위 혼인신고일과 같은 날인 1975. 2. 21.로 기재되어 있는데, 그 신고인이 H의 부친인 망 E로 기재되어 있는 점, 망 E에 대한 사망신고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1975. 12. 28.에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, 위 사망신고일 당시에 망 E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, 망 E의 병적증명서에 망 E이 1975. 2. 16.

사망하여 같은 날 전역하였다는 기재는 위 제적등본상 망 E의 사망일자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큰 증명력을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망 E이 위 제적등본 기재와 같이 원고와의 혼인신고일인 1975. 2. 21. 이전인 1975. 2. 16.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], 설령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은 위 2015년 단10045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면서 작성한 사전 현황 설명서에 원고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자백이 피고들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),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.

따라서 원고는 망 E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동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망인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 B과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. 다만,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,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이고,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, 이러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6다3220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,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망인은 피고 B(장녀), 원고, H, I(장남 망 E의 대습상속인들), F(차남), G(차녀)을 두고 사망하였으므로, 피고 B, 원고, H, I, F, G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고 할 것인바, 피고 B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 상당의 공유지분(각 1/4 지분)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인 각 1/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인 각 3/4 지분에 관하여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에게,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4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부동산 중 225/2,776 지분(= 75/694 지분 × 3/4 지분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김기춘

별지